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2. 27 예규 제84호
일부개정 2019. 9. 27 예규 제97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제적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7>

1. “자료”라 함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장서로 등록된 모든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총칭한다.
2.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및 등록원부에서 제적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도서관 자료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라 함은 제적된 도서 중에서 재활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자료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적 대상 자료)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모든 자료가 제적 대상이 된다.

제4조(자료의 제적 기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제도나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을 반영한 개정판의 그 이전 자료, 전집이나 총서 등에서 일부가 빠져 결본된 자료,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체가 가능한 자료, 최신성이 결여된 자료, 발음이나 표기법이 개정되기 이전 자료 등 기타 환경 변화에 의해 그 이용 가치를 상실한 도서
2. 파손·오손·낙장·낙서·마모 등으로 자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

- 가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비경제적인 자료 또는 보수 불가 자료
3. 복본 자료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4. 번역 및 내용이 조악한(쉬운말로 풀어서 쓸것) 도서, 소장가치가 희박한 잡서, 외설물 등
 5. 저작권에 위배되는 자료
 6. 일시적인 요구로 소장한 베스트셀러 또는 단기간의 특정 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
 7. 도서관 소장 중 분실 또는 소재 파악 불가능자료 및 대출된 도서 중 대출자의 전출, 연락 두절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8.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망실된 자료

제5조(자료의 제적 시기)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시 상시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6조(자료의 제적 범위) 자료의 제적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고시를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예규 제9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